

‘만 나이 통일법’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호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2. 1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11. 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11. 20.

다. 상정일자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11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새마포담당관 김정희】

가. 제안이유

‘만 나이 통일법’(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)의 시행 등 각종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 자치법규 중 각종 나이 표시 및 기타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행정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 (안 제1조 ~ 제10조)
- 인용 법조문 조항번호 등을 상위법령 제·개정 및 폐지 사항에 맞게 정비 (안 제11조 ~ 제18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
 - 「민법」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
- 입법예고 : 2023. 7. 13. ~ 8. 2. (제출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가.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‘만 나이 통일법’(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)의 시행 등 각종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 자치법규 중 각종 나이 표시 및 기타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행정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조례안 일괄개정 주요 내용

- 만 나이 정착을 위한 ‘만’ 표시 삭제에 관련한 소관부서 조례안은 10건으로 안 제1조 ~ 제10조에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하고, 안 제11조 ~ 제18조에 인용 법조문 조항번호 등을 상위법령 제·개정 및 폐지 사항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임.

연번	소관 부서	자치법규 명	개정사항
1	어 르 신 동 행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8조제1항 “만 100세” → “100세”
2	어 르 신 동 행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	제2조제1호 “만 65세” → “65세”
3	어 르 신 동 행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	- 제2조제1호 “만60세” → “60세” - 제3조제1항제1호 “만75세” → “75세”
4	아 동 청 소 년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 제2조제1호 “만13세” → “13세” - 제2조제2호 “ ” 만13세 이상 만 18세” → “13세 이상 18세”
5	아 동 청 소 년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	제2조제1호 “만9세 이상 만24세” → “9세 이상 24세”
6	체 육 진 흥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	- 제11조제1항제2호바목 “만18세” → “18세” - [별표2] 비고란 “만19세” → “19세” “만13세~만18세” → 13세~18세 “만12세” → “12세”
7	건 강 동 행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	-제3조제7호 “만 18세” → “18세”
8	건 강 동 행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	-제11조제1호 “만8세” → “8세”
9	건 강 동 행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	-제1조 “만 65세” → “65세” -제2조제1항 “만 65세” → “65세”
10	보 건 행 정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	-제3조제2항제7호 “만 65세” → “65세”

- 상위법령 제·개정 인용 법조문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조례안은 8건으로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,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(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) 달성을 추진하는 내용임.

연번	소관 부서	자치법규 명	개정사항
1	새 마 포 담 당 관	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	-제1조 “ [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] 제45조” → “ [행정절차법] 제52조의2”
2	행 정 지 원 과	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비용지급에관한조례	-제1조 “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” → “ [지방공무원법] 제7조제8항”
3	주 민 생 활 복 지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	-제2조제3호 “ [기초노령연금법] ” → “ [기초연금법] ”
4	아 동 청 소 년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	-제1조 “제35조제4항” → 제35조 제5항” 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” → 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”
5	교 정 책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	-제1조 “ [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] 제11조 제6항” → “ [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] 제11조제8항”
6	교 정 책 과	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-제1조 “ [지방자치법] 제116조의2” → “ [지방자치법] 제130조”
7	맑 환 경 과	서울특별시마포구 환경기본조례	-제13조제1항 “ [환경정책기본법] 제10조제3항” → “ [환경정책기본법] 제12조제3항”

연번	소관 부서	자치법규 명	개정사항
8	교 행 정 통 과	서울특별시마포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 한조례	-제1조 “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 호” → “「도로법시행령」 별표 2제4호나목” -제2조제1호 “도로법 제14조” → “「도로법」 제14조 “제17조2” → 제18조” -제7조 “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제8조” → “「도시교통 정비촉진법」 제26조” -제11조 “도로법 제84조 제4호” → “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”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 조례안 총 18건으로 우리 구 자치법규를 현행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,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정비율 평가에 대비하여 정비하는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조례개정후 만나이에 대해 구민들이 일상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제도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행정기본법」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「민법」

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